

법무부령

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연 월 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검찰청에서 작성·관리하고 있는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등 기록물 보존 관련 장부를 ‘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(CATS)’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저장·관리·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기록 열람·등사 청구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대검찰청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의4가목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02조제1항제1호”를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19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02조제1항제9호”를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19조제1항제9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02조제1항제66호”를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19조제1항제66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02조제1항제67호”를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19조제1항제67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02조제1항제70호”를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19조제1항제70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02조제1항제72호”를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19조제1항제72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”이란 기록의 보존, 대출, 폐기 등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.

제14조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02조제1항제63호”를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319조제1항제63호”로 한다.

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(각종 대장·서식의 전자적 처리) 제2장 내지 제7장에 기재된 각종 대장·장부의 작성, 유지, 보존, 송부는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인감증명서 1부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장에 서명한 경우) 1부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 중 “인감증명서 1부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장에 서명한 경우) 1부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Seal”를 “Seal or self-signed confirmation(If you signed a Power of Attorney)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의3서식 중 “인감증명서 1부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장에 서명한 경우) 1부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受托人的印鑑証明一份”을 “受托人的印鑑証明 或 我的簽名事實確認(如果您簽署了委托書) 一份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제2조(정의)	-----	
1. ~ 1의3. (생 략)		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		
1의4. “결정·처리 생성 문서” 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 의 문서를 말한다.		1의4. -----		
가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02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 -수사중지기록접수서		가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19조제1항제1호-----		
나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02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 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 서		나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19조제1항제9호-----		
다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02조제1항제66호의 보완 수사요구 결정서		다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19조제1항제66호-----		
라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02조제1항제67호의 불송 치기록 검토결과서		라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19조제1항제67호-----		
마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02조제1항제70호의 재수 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		마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19조제1항제70호-----		
바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02조제1항제72호의 수사		바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 319조제1항제72호-----		

중지기록 검토결과서

사. (생략)

2. ~ 7. (생략)

<신설>

제14조(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) 송치결정서(「검찰 사건사무규칙」 제302조제1항 제63호의 사건이송·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)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,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.

<신설>

사. (현행과 같음)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“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”이란 기록의 보존, 대출, 폐기 등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.

제14조(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) -----「검찰 사건사무규칙」 제319조제1항 제63호-----

-----.

제33조(각종 대장·장부의 전자적 처리) 제2장 내지 제7장에 기재된 각종 대장·장부의 작성, 유지, 보존, 송부는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

다.